

평택청북 세종 헤르메스 민영주택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규제지역)



■ 「평택청북 세종 헤르메스」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건본주택 운영 안내

◎ 「평택청북 세종 헤르메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건본주택 관람을 홈페이지(www.평택세종헤르메스.com)와 병행하여 운영됩니다. 감염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건본주택 운영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건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건본주택 입장 시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손 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최근 1개월 이내 해외(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지역)에 체류한 경우(출입국 사실 증명서에 최근 1개월내에 출입국 사실이 있는 분은 여권을 지참하여 체류지 확인 필요)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청약 신청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21.05.2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 아파트에 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재당첨 제한(분양가상한제 10년)을 받게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라목)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성년자에게 공급하므로 본인은 해당주택건설지역(평택시)에 거주해야 하며,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평택청북 세종 헤르메스」 전화(☎1800-0041)를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 등을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 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11.1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6.24.(금요일), 주택관리번호는 2022-910184입니다.(주택소유여부, 청약자 나이, 거주지역 등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임)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5.13.(금요일)이며, 주택관리번호는 2022-000242 이므로 주택공급가격 및 세부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사전에 확인 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평택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외국인은 청약 불가합니다.)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하여 당첨시 부적격 당첨 또는 무효처리** 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동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한 자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등 세부사항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규칙 제54조에 따라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간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에 제한**을 받습니다.(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한 없음.)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1항 제3호)	※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 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 **청약 제한사항 확인** '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공급하므로 제23조제2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장기 해외체류자는 본 아파트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 아파트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본 아파트는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해당 주택의 순위 내 청약에서 공급 가구 수보다 적은 청약자가 신청해 경쟁이 미 발생된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 (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매매대금 완납 전 선 등기된 경우는 등기접수일 기준)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 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수도권외 지역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말함.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청약 신청 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 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 은행 및 취급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बैं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 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 후 재공급	○	○	X	X

■ 청약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분	무순위 사후 접수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 체결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일정	2022년 06월 29일(수)	2022년 07월 04일(월)	2022년 07월 05일(화)~ 07월 09일(토)	2022년 07월 11일(월)~ 07월 12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을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한국부동산원은 당첨자에 대하여 SMS 등 개별 통지를 하지 않음.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잔여 세대 수의 9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방법	인터넷 청약 (09:00~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소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APT 무순위] 메뉴에서 신청 ※ 청약통장 불필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청약Home' 에 10일간만 게시	당사 건분주택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1158-6)		

■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약Home' 은 신청자 개인의 인터넷 사용환경 등으로 인한 청약신청 불가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발급받으시어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조정대상지역인 평택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분양가격과 무관하게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 * 신청 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고, 재당첨제한 등의 기준은 “당첨자 발표일” 이며, 주택면적은 “전용면적” 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청약신청은 규제지역 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은 1건만 청약 가능하며, 1인이 2건 이상 청약하여 2건 이상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 규제지역 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2명 이상 당첨 시 재당첨 제한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분양가상한제 10년) 적용 및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주택에 당첨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른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 (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1.11.16.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

-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1158-7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5층, 지상 29층 3개동, 총 280세대 중 정당계약 및 예비입주자 계약 이후 잔여물량 129세대
- 입주시기 : 2025년 01월 31일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잔여세대	잔여세대 동·호수	
						동	호수
민영주택	2022-910184	01	077.3296A	77A	7	103	502, 702, 1102, 1402, 1502, 1602, 2402
		02	084.4425A	84A	28	101	401, 601, 901, 1101, 1201, 1301, 1601, 1901, 2101, 2401, 2501, 2601, 2701, 402, 502, 602, 702, 802, 902, 1002, 1202, 1402, 1502, 1902, 2002, 2102, 2302, 2402
					26	102	501, 601, 701, 801, 901, 1001, 1201, 1501, 1901, 2001, 2101, 2401, 2601, 402, 502, 602, 1002, 1102, 1302, 1402, 1502, 1602, 1902, 2202, 2302, 2502
		03	084.8701B	84B	17	101	603, 703, 1403, 1703, 1903, 2203, 2803, 504, 704, 804, 1204, 1504, 1604, 1704, 2204, 2304, 2404
					27	102	903, 1103, 1203, 1403, 1503, 1603, 1703, 1803, 1903, 2103, 2603, 2803, 504, 604, 804, 1004, 1204, 1304, 1404, 1604, 2204, 2304, 2404, 2504, 2604, 2804, 2904
		04	084.9398C	84C	6	103	803, 903, 1103, 1203, 1403, 1703
		05	130.3579A	130A	17	103	601, 701, 801, 901, 1001, 1101, 1301, 1601, 1701, 2101, 2201, 2301, 2401, 2501, 2601, 2701, 2801
06	151.4775A	151A	1	101	2901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면적은 소수점 4번째 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 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입일정

[단위: 원]

주택형	총 잔여 세대수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 시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2022-12-21		2023-04-21	2023-08-21	2023-12-21	2024-04-21	2024-08-21	입주시		
077.3296A	7	5	1	63,338,400	214,461,600	-	277,800,000	27,780,000	27,780,000	27,780,000	27,780,000	27,780,000	27,780,000	27,780,000	27,780,000	83,340,000	
		6~10	1	64,934,400	219,865,600	-	284,800,000	28,480,000	28,480,000	28,480,000	28,480,000	28,480,000	28,480,000	28,480,000	28,480,000	28,480,000	85,440,000
		11~20	4	66,393,600	224,806,400	-	291,200,000	29,120,000	29,120,000	29,120,000	29,120,000	29,120,000	29,120,000	29,120,000	29,120,000	29,120,000	87,360,000
		21~29	1	67,830,000	229,670,000	-	297,500,000	29,750,000	29,750,000	29,750,000	29,750,000	29,750,000	29,750,000	29,750,000	29,750,000	29,750,000	89,250,000
084.4425A	54	4	3	78,500,400	265,799,600	-	344,300,000	34,430,000	34,430,000	34,430,000	34,430,000	34,430,000	34,430,000	34,430,000	34,430,000	34,430,000	103,290,000
		5	3	81,054,000	274,446,000	-	355,500,000	35,550,000	35,550,000	35,550,000	35,550,000	35,550,000	35,550,000	35,550,000	35,550,000	35,550,000	106,650,000
		6~10	14	83,242,800	281,857,200	-	365,100,000	36,510,000	36,510,000	36,510,000	36,510,000	36,510,000	36,510,000	36,510,000	36,510,000	36,510,000	109,530,000
		11~20	20	85,044,000	287,956,000	-	373,0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111,900,000
		21~28	14	86,685,600	293,514,400	-	380,200,000	38,020,000	38,020,000	38,020,000	38,020,000	38,020,000	38,020,000	38,020,000	38,020,000	38,020,000	38,020,000
084.8701B (101동)	17	5	1	71,774,400	243,025,600	-	314,800,000	31,480,000	31,480,000	31,480,000	31,480,000	31,480,000	31,480,000	31,480,000	31,480,000	31,480,000	94,440,000
		6~10	4	74,077,200	250,822,800	-	324,900,000	32,490,000	32,490,000	32,490,000	32,490,000	32,490,000	32,490,000	32,490,000	32,490,000	32,490,000	97,470,000
		11~20	7	75,559,200	255,840,800	-	331,400,000	33,140,000	33,140,000	33,140,000	33,140,000	33,140,000	33,140,000	33,140,000	33,140,000	33,140,000	99,420,000
		21~29	5	76,881,600	260,318,400	-	337,200,000	33,720,000	33,720,000	33,720,000	33,720,000	33,720,000	33,720,000	33,720,000	33,720,000	33,720,000	101,160,000
084.8701B (102동)	27	5	1	79,024,800	267,575,200	-	346,600,000	34,660,000	34,660,000	34,660,000	34,660,000	34,660,000	34,660,000	34,660,000	34,660,000	34,660,000	103,980,000
		6~10	4	81,510,000	275,990,000	-	357,500,000	35,750,000	35,750,000	35,750,000	35,750,000	35,750,000	35,750,000	35,750,000	35,750,000	35,750,000	107,250,000
		11~20	12	83,744,400	283,555,600	-	367,300,000	36,730,000	36,730,000	36,730,000	36,730,000	36,730,000	36,730,000	36,730,000	36,730,000	36,730,000	110,190,000
		21~29	10	85,294,800	288,805,200	-	374,100,000	37,410,000	37,410,000	37,410,000	37,410,000	37,410,000	37,410,000	37,410,000	37,410,000	37,410,000	112,230,000
084.9398C	6	6~10	2	74,578,800	252,521,200	-	327,100,000	32,710,000	32,710,000	32,710,000	32,710,000	32,710,000	32,710,000	32,710,000	32,710,000	32,710,000	98,130,000
		11~20	4	76,152,000	257,848,000	-	334,0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100,200,000
130.3579A	17	6~10	5	120,204,000	406,178,180	40,617,820	567,0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170,100,000
		11~20	4	123,172,000	416,207,270	41,620,730	581,0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174,300,000
		21~29	8	125,716,000	424,803,630	42,480,370	593,000,000	59,300,000	59,300,000	59,300,000	59,300,000	59,300,000	59,300,000	59,300,000	59,300,000	59,300,000	177,900,000
151.4775A	1	29	1	189,316,000	639,712,720	63,971,280	893,000,000	89,300,000	89,300,000	89,300,000	89,300,000	89,300,000	89,300,000	89,300,000	89,300,000	267,900,000	

※ 상기 공급금액은 각 주택형별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비 및 추가 선택품목(플러스 옵션 등) 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 계약을 통해 선택 가능합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비

[단위:원]

구분	공급대금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 시	2023-04-21	입주 시	
77A	7,410,000	741,000	741,000	5,928,000	-
84A	7,730,000	773,000	773,000	6,184,000	-
84B	9,790,000	979,000	979,000	7,832,000	-
84C	9,010,000	901,000	901,000	7,208,000	-
130A	9,950,000	995,000	995,000	7,960,000	-

※ 발코니 확장형 미 선택 시 기타 추가 선택품목(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 유상옵션 등)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신청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평택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단, 외국인은 청약 불가

*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청약신청금은 없음. (본인 및 세대원 중 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 현재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 본 주택에 당첨되는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 받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 시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청약신청 등 제한을 적용 받음.

■ 청약신청 제한

- * 동 주택(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자
- * 동 주택(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 *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되어 현재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 공급 질서 교란자로서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당첨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로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로 명단 관리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택 소유)
-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평택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
- * **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 기준 재당첨 제한 주택에 당첨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 * 같은 세대에 2인 이상 당첨된 자

■ **당첨자 제출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대상	서류 발급기준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 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포함” 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및 “상세” 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청약 불가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현재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 으로 발급

추가서류 (본인 외 모두 제3자)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당첨자)	- 본인 발급용에 한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접수 불가
	○	위임장	-	-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건본주택 비치)
	○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서명)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구비서류는 무순위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24.)이후 발행분에 한 합니다.

■ **당첨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시 : 2022.07.11.(월)~07.12.(화) 10:00~17:00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비고
공통서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분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대리 계약 불가
	정부수입인지	- 계약일 당일까지 발급하여 지참 (수입인지세액 : 1억원 이상~10억원 이하 15만원)
		<수입인지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 계약금 현장수납 불가
제3자 대리 계약 시 (본인 외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공통서류	- 상기 공통서류 일체를 계약자 본인이 발급하여 대리인이 제출
	계약자의 인감도장	- 인감도장 날인 및 대조용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 발급일 확인(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위임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대리인 도장 날인(서명), 당사 건본주택 내 비치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서명)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구비서류는 무순위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24.)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 바랍니다.

※ 인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므로,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15만원)를 납부하신 후 정부수입인지를 계약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잔여 세대수의 9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무순위 청약 예비 입주자 동·호수 선정 :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일정 및 선정 방식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장소 : 당사 견본주택(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1158-6), 사업주체의 상황에 따라 계약체결장소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Ⅲ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유의사항

* 당첨자의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 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코로나19 정부정책에 따라 입장 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이나, 당첨(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 포함) 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고, 향후 다른 주택에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단순 번심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더라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재당첨제한 기간 향후 다른 분양주택의 당첨에 제한을 받습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한 없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 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검색 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 체결일

2의3. 제2조 제7호의2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3. 그 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2.05.13.), 청약홈(www.applyhome.co.kr) 및 당사 홈페이지(www.평택세종헤르메스.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1158-6

■ 분양문의 : 1800-0041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주식회사 세종건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은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입주자모집공고에 미기재된 사항이나 기재 사항에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